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7도11523 가. 위계공무집행방해

나. 공무상비밀누설

피 고 인 피고인

상 고 인 피고인

변 호 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

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노7306 판결

판 결 선 고 2019. 1. 10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

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그 죄수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,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판결이유에 명시할 범죄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_____

 대법관 조재연 _____

주심 대법관 노정희 _____